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신성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5
----------	------

발의연월일 : 2021. 10. 21.

발 의 자 : 신성봉,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권태호
박채연, 이명녀, 안영호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 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계획
구민활동가, 조사대상(안 제3조 ~ 안 제6조)

다. 기록물의 생산, 실물자료의 수집, 도시역사문화의 보존
보관장소(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공개, 대여, 활용, 심의·자문기관, 업무의 위탁(안 제11조 ~ 안 제15조)

3. 근거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문화기본법」 제5조 및 제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자료 전산화”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역사 문화에 관하여 검증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전자화하여 보존 관리하고 쉽게 검색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반을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의 구술자료 수집관련 경험과 경력 또는 역사학, 문화 인류학 등 관련 전공자로 지역 역사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도시역사문화를 관리운영 하는 부서
5.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활동가) ① 구청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사람을 구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 ①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구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보관 장소)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①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① 공공, 교육,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자료 전산화 자료대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자료 전산화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인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활용) 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 할 수 있다.

1. 이야기하기를 통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4조(심의·자문기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의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